

대원강업주식회사 정관

개정	1979. 2. 27	1990. 3. 16	1999. 3. 19	2008. 3. 21
	1983. 2. 26	1992. 3. 12	2000. 3. 24	2010. 3. 19
	1984. 2. 28	1993. 3. 12	2001. 3. 23	2012. 3. 23
	1985. 2. 27	1994. 3. 18	2002. 3. 22	2013. 3. 22
	1986. 2. 27	1996. 3. 15	2003. 3. 21	2014. 3. 21
	1987. 2. 27	1997. 3. 14	2006. 3. 17	2018. 6. 12
	1988. 3. 18	1998. 3. 27	2007. 3. 23	2019. 3. 22
	2024. 3. 25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대원강업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DAEWON KANG UP CO., LTD.로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각종 수송기용스프링, 시-트, 액슬샤후트 및 각종 기계용스프링의 제조판매업
- ② 각종체인 제조판매업
- ③ 압연업
- ④ 철강재, 농기구, 기계 및 장비, 금속물의 제조판매업
- ⑤ 수출입업
- ⑥ 부동산임대업
- ⑦ 철만물의 제조판매업
- ⑧ 각종 고무제품의 제조판매업
- ⑨ 자동차교육서비스업
- ⑩ 건설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 ⑪ 전기 각 항의 기재된 목적달성에 관련 또는 부수되거나 직접·간접으로 유익한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제3조(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현지법인 등을 설치, 이전, 폐지할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wonspri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자본과 주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구천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6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6조의1(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2%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1(삭제)

제8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삭제)

제11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체

제12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

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4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9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5조(소집시기)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 과 “한국경제신문” 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제19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본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제27조(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2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제28조(이사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28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제30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개최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삭제)

②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33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본 회사의 일상업무를 분장하며 대

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2(비등기 경영임원)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경영임원(이하 '경영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삭제)

④ 경영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33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삭제)

제33조의5(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ESG경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6(감사위원회)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본조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등기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계 산

제40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4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1(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년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2조의2(삭제)

제43조(주주배당금) ① 이익의 배당금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주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⑤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제44조(업무의 규칙) 본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2, 제10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의 2,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통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1 및 제42조의 2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3항, 제33조의 4, 제34조, 제36조3항, 제36조4항, 제4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의2, 제14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5일 제77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9조 이사의 임기는 본 정관 개정 이후 선임된 이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